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『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』의 개정(2012.2.27)에 따라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 설치 및 운영 지원

→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(안 제2조제1항)

○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
→ 제2조제2항의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한 지원을 삭제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『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』의 개정(2012.2.27)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하여,

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의 설치·운영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,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
일부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